

문 의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과 장 박호형 사무관 송기중	042-481-3316
	2016년 7월 1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6월 30일(목)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7월 1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발효!

-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 상표출원 서비스 제공 가능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상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동 조약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 정식명칭 : **STLT**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며, 2006년 싱가포르에서 「개정 상표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5개국 가입

싱가포르 조약은 절차의 신속보다는 출원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국제상표 조약으로, 지난 1994년 채택된 '상표법 조약'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제적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 조약의 가입으로 비전형 상표(Non-Traditional Mark: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로, 소리·냄새 상표를 말함)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표 출원·등록과정에서 민원인이 실수나, 착오로 민원인이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는 것을 의무화 해 출원인의 권리가 도중에 소멸·사장되는 것을 방지, 출원인의 편익을 극대화 했다.

예를 들어 상표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어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냈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바로 거절결정을 하지만, 조약에 가입하면 추가적인 답변 기한(최소 2개월)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싱가포르 조약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원인 임의로 작성된 출원서라도 그 내용이 국제표준서식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허청은 그간 국내 상표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동 조약 가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조약이행을 위한 사항들이 국내법에 반영되어 이미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동 조약의 발효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이를 국제사회에 인정하는 절차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싱가포르 조약은 이미 가입돼 있는 상표법 조약보다 민원인의 편의 및 권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어, 국내 출원인이 상표 출원 제도를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행정 위주’에서 명실상부한 ‘출원인 중심’의 상표제도를 구축하게 되어 고객이 최우선인 상표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 ‘싱가포르 조약’ 주요 내용

‘싱가포르 조약’ 주요 내용

□ 개 요

- 각국 상표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출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WIPO 주관으로 기존 「상표법조약」을 개정하여 채택된 조약('08)

◆ STLT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 WIPO 「상표·디자인·지리적표시 상설위원회(SCT)」에서 논의 ('02.5~'05.4)
- 「개정 상표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채택 ('06.3, 싱가포르)
- 총 10개국 가입에 따라 발효 ('08.12)

□ 주요내용

- ① 기술 발전으로 시장 거래형태 등이 변화됨에 따라 **상표의 보호대상을 소리·냄새상표 등 비전형(非典型)상표까지 확대** 가능 (조약 제2조)

* 비전형상표 도입은 한-미 FTA 합의사항으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이미 시행 중 ('08.10)

- ② 계약당사자가 서류 외 전자출원 등 출원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화·선진화 (조약 제8조)

- 기존 「상표법 조약」은 서류·팩스만을 공식 전송수단으로 인정하였으나, 인터넷·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전자적 전송수단을 인정

- ③ 제출 서류의 항목 내용이 국제표준서식(조약 규칙)과 합치되는 경우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 (조약 제8조)

* 임의로 작성된 출원서라도 그 내용이 국제표준서식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함

- ④ 출원·등록과정에서 민원인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권리 상실을 방지** (조약 제14조)

* 의견서 제출기간(2개월) 내에 답변하지 못한 경우, 종전에는 거절결정 하였으나, 추가적인 기간(ex. 2개월)을 부여, 구제 가능

- ⑤ 전용사용권 등 **상표사용권의 등록·변경·말소 및 사용권 미등록 효과 등 규정** (조약 제17~20조)

*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효과가 발생토록 하는 규정 기시행(한-미FTA)